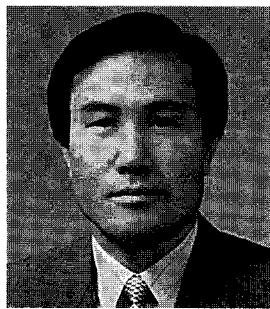


### 농산물 안전성 확보 이렇게 하고 있다(Ⅱ)

용도 바꾸거나  
기준과 농산물을  
출하시기 조절



성기용  
국립농산물검사시험소 농업사무관

립농산물검사소는 1949년 발족이래 주로 하·추곡 수매업무와 정부 양곡의 보관·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1993년부터는 농축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표준규격 출하, 원산지관리 등 농산물의 품질 및 유통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왔으며 여기에 생사검사('94.12), 인삼검사('95.12) 업무를 더하여 명실상부한 농산물 품질관리 종합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졌다.

근래에 와서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우리 국민들은 만불소득수준에 걸맞는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먹거리에 대한 선택 기준이 빠른 속도로 바뀌어 안전한 식품에 대한 무한(?)한 욕구를 나타내고 있다. 뿐

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WTO체제 하에서 농산물 시장이 급속히 개방되고 있는 추세로 우리도 지난 7월 1일부터는 쌀, 쇠고기를 제외한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는 상태로서 수입 농산물에 의한 농업인의 피해는 물론 소비자의 건강보호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먼저 안전성이 확보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품질면에서 차별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면 소비자는 우리 농산물을 믿고 찾을 것이고 소비가 촉진되어 자연 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며 수입 농산물의 파고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 안전성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농림부는 1993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4553호)』에 근거하여 당소로 하여금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토록 한 바 있으며 '96. 8에는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업무 처리 요령(농림부고시 제1996-52)』을 고시하여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또한 금년 3월에는 동법률('97.3.7. 개정공포)에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놓았다.

## 94년부터 장비·전문인력 확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분석 즉, 잔류 농약, 곰팡이독(Mycotoxin), 중금속 등의 분석은 타분석과는 달리 많은 시간과 기자재가 소요되며 고도의 훈련된 전문 분석 인력이 다수 확보되어야 한다. 당소에서는 안전성 검사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94년부터 정밀분석장비 및 시설의 확보, 전문분석 인력의 양성 및 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시험소를 비롯한 4개 지소(경기, 충남, 전남, 부산)에 안전성 분석 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강원, 전북, 경북 등 3개 지소에도 분석실을 설치할 예정이다(98년까지 11개 전 지소에 설치예정).

'95년부터 3년간 37억9천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GC, GC/MS, HPLC, ICP(중금속분석기)등 정밀분석장비 8종 56대, 전처리 및 부대장비 36종 3백27대를 확보하여 시험소 및 4개 지소 분석실에 배치하였으며 '95년부터 국내 훈련 및 해외 연수로 양성한 전문분석요원 92명을 확보하여 분석에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분석시설 및 장비, 분석 요원의 확보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므로 연차별 확보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신속하고 정확도 높은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당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성 조사의 절차를 일반 농산물과 품질인증 농산물로 나누어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안전성 조사원 137명 전국 상주 주산단지·도매시장서 시료채취

일반 농산물의 경우에는 먼저 시·도 및 시·군별로 설치되어 있는 『농수산 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추진협의회』(이하, 지역추진협의회)의 협의 과정을 거쳐 안전성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작물별로 주산단지, 미곡종합처리장, 도매시장 등에서 안전성 조사원(각 출장소당 1명; 전국 1백37명)이 시료를 채취하여 각지소의 분석실 또는 시험소에 분석을 의뢰하여 정밀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분석결과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역추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농가에서 자율 폐기하거나 용도 전환 또는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출하 시기를 조절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품질인증 농산물인경우에는 먼저 신청 농가의 재배토양 및 농업용수 등의 재배 환경에 대한 중금속 오염 여부 등을 조사하고 유기, 무농약, 저농약 재배 등 재배 조건별 심사 기준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증된 농산물에 대하여는 매분기마다 재배장소 또는 시중 유통점에서 시료를 불시 채취하여 농약검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그 결과, 유기 또는 무농약재배 품질인증품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되면 인증 취소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인증표시 정지 등의 엄한 조치를 취하며 저농약 및 일반재배 품질인증품의 경우에는 재배 조건 별로 정해 놓은 다소 완화된 기준에 따라 조치하게 된다(농검예규 제111호 특산물 품질인증요령 참조).

지금까지의 농산물 안전성 조사 실적을 보면 '94년에 96점, '95년에 3백82점을 분석하는데 불과하였으나 '96년에는 53종 농산물 1천3백14점(품질인증농산

## 기획특집 / 농산물 안전성 확보 이렇게 하고 있다(Ⅱ)

물 4백99점 포함)을 분석하였으며 97년도에는 65종 농산물 4천 여점에 대하여 농약 76성분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96년도 조사 실적중 일반 농산물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표 1과 같다.

같다. 이러한 결과는 공교롭게도 식품 안전성 분야의 최고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93년도에 자국내 농산물에 대하여 FDA가 실시한 안전성 검사 결과(1.7%)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선진국

인 보완과 아울러 농업인 모두에게 조사의 필요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동참을 유도해 나간다면 본 제도의 조기 정착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 경쟁력 강화, 소득증대효과 기대

이러한 안전성 조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를 몇 가지 열거하면 첫째,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안전성 조사를 계속하게 되면 농업인들이 지금까지의 농약 사용 관행에서 탈피하여 농약 안전 사용기준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게 되고 소비자들도 국산 농산물이 수입농산물보다 안전하다는 의식을 갖게 됨에 따라 국산 농산물의 소비가 촉진될 것이다.

과 대등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시행 초기 단계이므로 추진과정에서 다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있을 수 있다. 즉, 분석 물량의 계절적인 편중에 의한 분석지연, 허용기준 또는 안전사용기준 미설정 품목(깻잎, 부추, 미나리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의 어려움, 지역추진협의회 구성원의 적극성 결여, 농가 자율폐기 또는 용도 전환 기피 등의 사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추진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

둘째, 국제경쟁력이 있는 우리 농산물의 수출 증대를 가져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미국, 일본 등에 수출한 농산물이 통관 과정에서 안전성 검사에 불합격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몇차례 있었으나 수출전 재배과정부터 안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면 이러한 반품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농산물 수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표 1. 1996년 농산물 안전성 조사결과

조사대상	조사건수 (A)	부적합건수 (B)	부적합비율 (B/A)	불검출건수 (비율)	주요검출성분
쌀, 상추, 깻잎, 사과, 포도 등 33종 농산물	815	13	1.7%	558 (68.5%)	Cypermethrin, EPN, Edifenphos, Diazinon, Chlorpyrifos, Iprodion, Fenvalerate, Procymidone, Fenitrothion, Chlorothalonil, Pirimiphos-methyl, Methidathion, Endosulfan, Phenthioate(14)

부적합률, 미국과 같은 1.7%에 불과 위의 조사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채소류, 과실류, 곡류 등 33종의 일반 농산물을 주로 재배 또는 출하 단계에서 시료를 채취 하여 최소 5성분, 최대 65성분의 농약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8백15점 중 5백58점(68.5%)이 전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시료는 13점으로서 전체 시료의 1.7%에 불과하였다. 해당농산물에 대한 조치내역은 표2와

표 2. 부적합 판정 농산물 조치내역

조사건수	부적합건수	농가자율 폐기	농가자율 출하연기	용도 전환	농약안전 사용제도
815건	13건	3건	6건	1건	3건

※ 용도 전환은 풋고추를 마른고추로 출하한 것임.

것이다.

셋째,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 할 수 있게 되어 농약에 의한 토양, 용수 등 환경오염 방지 및 생태계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안전외면한 신도불이는 공념불 우리가족이 먹는다는 정성 필요

이상 우리 시험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추진 상황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문제는 정부의 감시나 규제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우리 농업인과 유통관련 종사자 그리고 정부 관계자 모두는 국내외 여건 변화를 직시하여 머리를 맞대고 무엇이 우리 농업을 살리는 길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소비자의 먹거리에 대한 무한 대의 안전성 요구, WTO 체제에서의 개방화 압력 등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우선 우

리 농업인 모두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획득하고 품질을 차별화하여 수입 농산물과 당당히 겨뤄 우위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 만이 우리 농업의 미래를 보장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은 뒷전에 두고 아무리 “身土不二”를 목청 높여 외쳐봐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 농업인 모두는 시장에 내는 모든 농산물이 내부모, 내형제, 내자식들이 먹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 가꾼다면 안전성 문제는 쉽게 해결되리라 믿는다.

소비자들의 불신이 어디서, 왜 있어 왔는지를 곰곰이 따져 봐야 한다. 내것만은 좀 더 패깔을 내기 위하여, 내것만은 오랫동안 두어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것만은 좀더 비싸게 팔아 보려고 어떻게 했는지, 또 병충해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없이 남이 농약을 살포하니까 덩달아 치지는 않았는지, 남이 해보라

하니까 마냥 따라하지는 않았는지를 … 이런 욕심과 관행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몇 푼의 작은 이익을 얻게 할지는 모른다. 그러나 소비자의 불신을 가중시켜 가까운 장래에 우리 농업인 모두가 공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산지 수집상이나 도·소매인 등의 유통 종사자도 이런 경우에 절대 예외는 아니다. 농산물 안전성의 최소한의 보루는 농약안전사용 기준의 준수이다. 안전사용기준을 잘 지키면 농산물은 우리 나라 국민 모두가 평생 마음껏 섭취하여도 장수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농약정보**

